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24호

#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방법

### 가. 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 공업(일반기계) | 공업(일반전기) | 시설(일반토목) | 시설(건축) | 합계 |
|---|---|---|---|---|
| 13 | 4 | 1 | 13 | **31** |

###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명 | 직렬(직류) | 필기시험 과목 | 비고 |
|---|---|---|---|
|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 공업(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 · 시험시간: 60분(10:00~11:00)<br>· 과목별 100점 만점<br>·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br>· 객관식 4지택 1형<br>· 물리(1차), 그 외 과목(2차) |
| | 공업(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 시설(일반토목) | 물리, 토목일반, 측량 | |
| | 시설(건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며, 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물리는 물리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일이 2024. 11. 2.인 경우, 2024. 9. 30. 현재가 기준이 됨.

다. **제3차 시험: 서류전형**(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격·가산점 등 서면 심사)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제1·2·3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2 시험 일정

| 추천서 제출기간<br>(학교→교육청) | 원서 접수기간<br>(취소마감일) | 시험<br>구분 | 시험장소<br>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br>발표일 |
|---|---|---|---|---|---|
| **6.24.(월) 09:00<br>~<br>6.28.(금) 18:00** | **8.26.(월) 09:00 ~<br>8.30.(금) 18:00**<br>[취소마감일시: 9. 2.(월) 18:00] | 필기<br>시험 | 10.14.(월) | 11.2.(토) | 11.18.(월) |
| | | 면접<br>시험 | 11.18.(월) | 11.29.(금) | 12.18.(수)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 2. 28.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 2. 28.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3 응시 자격

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졸업자 중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학교장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6.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다.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 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4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가.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졸업자 중 각급 대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4년제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진학한 경우 <u>중퇴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u>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 등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졸업 예정(2024학년도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합격은 취소됨

### 나. 추천학과

|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해당(관련) 학과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공업(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 | 공업(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 시설(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 시설 (건축) | 건축(건축설비) |

❖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②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단,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함(2026년부터 적용)**

### 다. 학과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라.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을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마. 추천 인원 제한 없음

### 바. 추천 방법

○ 해당 학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자체 추천계획(위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체 추천기준·추천절차 수립),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추천해야 함

## 5 추천서 제출

### 가. 제출기간: 2024. 6. 24.(월) 09:00 ~ 6. 28.(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나. 추천인원: 제한없음

### 다.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 → ① K-에듀파인 전자공문 제출, ② 관련 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은 불가합니다.

### 라. 제 출 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 031-820-0572~0575)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마.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
| K-에듀파인<br>전자공문 | ○ 응시자 추천 공문<br>○ 추천 현황표 1부 (붙임1 서식 1) |
| 방문(등기우편)<br>제출 | ○ 학교장 추천서 각 1부 (붙임1 서식 2)<br>○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서식 3)<br>○ 성적증명서(NEIS상의 증명서) 1부 (학과성적 기준 반드시 확인)<br>- 평균 석차 비율 또는 평균 석차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br>○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처: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지도에서 '경기도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8. 26.(월) 09:00 ~ 8. 30.(금) 18:00 [9. 2.(월) 18:00까지 취소]

라. 응시수수료: 5,000원(9급)

###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M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사진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임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함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이미 현상된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 사용 불가
-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명 | 응시표 출력기간 |
|---|---|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10. 14.(월) 10:00 ~ 11. 2.(토) 10:00까지 |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 유의사항

○ 【수정·취소】 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입력 가능)**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선발직렬(직류)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 【자격요건 확인】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br>(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br>5% 또는 10% |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br>•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br>•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 의사상자 등 대상자<br>(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br>3% 또는 5% | |
| 직렬별 가산대상<br>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br>3% 또는 5%<br>(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 비율 |
|---|---|---|---|---|
| 공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 5% |
|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
|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
|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3%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 5% |
| | | 기 능 장 : 전기 | | |
|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시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5% |
|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3% |
|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건축사 | 5% |
| |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하단 등록기한 참고)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한(등록기한내 미등록시 가산점 미인정)**

| 구분 | 가산점 등록 기한 |
|---|---|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24. 11. 4.(월) 18:00까지 |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 번호 또는 증서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8 합격자 결정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졸업 예정(2024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미적용 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 절차에 대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 9 응시자 유의사항 등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르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휴대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이며,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접수기간: 8. 26.(월) 09:00 ~ 9. 2.(월)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031-820-0572~0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학교 협조 사항

**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천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

##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 까지 확대

| 변경 전(현행) | 변경 후 |
|---|---|
|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br>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br>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br>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br>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br>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br>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 202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변경 전(현행) | 변경 후 |
|---|---|
| 제한 없음 |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 적용<br>※ 전문교과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3] 중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직렬(류) 응시 가능. 단, 이 경우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 안내(서식 포함) 1부.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서식 포함) 1부.